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 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311 제출연월일 : 2016. 12. 6. 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에서는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없고 이에 관하여 조 례를 위임한 바도 없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 개정

2. 주요내용

○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바도 없어 단서조항삭제 (안 제6조제3항)

3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: "따로 붙임"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 : 2016. 11. 1. ~ 11. 21.(의견 없었음)

바.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가결

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 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3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쳙 했

위하여 필요할 경우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응해야 한다.

개 정 안

제6조(실태조사) ③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제6조(실태조사) ③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령 |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삭 제>

<관련법령>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.
-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 안 번 호 1311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 상
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○ 제출연월일 : 2016. 12. 6.(화)

O 제 출 자: 중구청장

O 위원회회부 : 2016. 12. 12.(월)

○ 위원회심사 : 2016. 12. 16.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김창욱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서는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에 응하 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없고 이에 관하여 조례를 위 임한 바도 없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 개정

나. 주요골자

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
규정이 없고 이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바도 없어 단서

조항삭제

(안 제6조제3항)

4. 근거법령

- ○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익희)

- 우리 조례 제6조 단서조항이 상위법령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내용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고 자치법규 정비과정에서 정비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 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